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61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9.

발 의 자 : 이주영·이준석·천하람
김대식·최수진·김용태
김선민·황명선·윤재옥
한지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동의 없이 수업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한 뒤 이를 편집·합성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.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,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1,197건에서 2023년 5,050건까지 급증한 뒤 2024년 4,234건, 2025년 1학기에만 2,189건이 집계되었고, 이 중 상해·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침해행위도 2020년 144건에서 2024년 675건, 2025년 1학기 389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임.

특히 무단 촬영·영상 유포는 교권침해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, 최근에는 학생이 인공지능(AI) 딥페이크 기술로 교원의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사건이 실제로 기소·재판까지 이어지고 있음. 이러한 무단 촬영·유포 행위는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, 촬영 대상이 되는 학생 및 학교

구성원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함께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큼.

이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 보호와 수
학권 등 교육활동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
바에 따라 학교 안에서의 촬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
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의6제5호 및 제20조의8 신설).

법률 제 호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6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20조의8에 따른 교내 촬영행위의 제한

제2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8(교내 촬영행위의 제한 등)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안에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0조의6(「아동복지법」의 적용 배제)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제3호,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.	제20조의6(「아동복지법」의 적용 배제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5. 제20조의8에 따른 교내 촬영행위의 제한
<u><신설></u>	<u>제20조의8(교내 촬영행위의 제한 등)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안에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.</u>